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39 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 박상혁 · 김용만 · 박홍근

이해식 • 박용갑 • 한민수

김주영 · 박희승 · 이연희

박균택 • 염태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,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.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임.

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,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

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구술심리를 할 수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	개 정 안
제40조(심리의	방식)	1	~	3	제40조(심리의 방식) ① ~ ③
(생 략)				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			④ 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통령
					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술심
					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
					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
					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					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
					하여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
					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					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
					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
					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
					면 이에 따라야 한다.